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91호 (2015-23) 발행일 : 2015. 08. 31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아동보호체계의 실태 진단과 안전보장체계 구축의 필요성*

아동기에 경험하는 학대, 폭력, 유기·방임, 빈곤, 가족갈등 및 해체 등의 발달위기는 아동의 성장기 전반에 걸쳐 치명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성인기 이후까지 그 부정적 여파가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의 국가 책임에 관한 논란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비스 집행 과정의 부처 간 연계 부족, 형식적인 서비스 연계, 서비스 공급 주체 간 정보공유의 제약 등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위기아동의 조기 발견 및 보호서비스 개입에서 종료에 이르기까지 불분명한 책임소재, 서비스 책무성에 대한 인식 부족, 일선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와 과중한 업무부담(인력부족)에 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건강한 성장발달과 아동권리의 증진을 도모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발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안전을 담보하는 사전 예방적 개선 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박 세 경
복지행정연구실 연구위원

1. 아동보호체계(Child Protection System)와 요보호 아동

- 아동보호체계는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을 담보할 수 없는 학대, 폭력, 유기·방임, 빈곤, 가정해체 등의 위기 상황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공적 체계로 정의할 수 있음
 - 모든 아동이 잠재하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의 공평한 출발과 행복한 성장기를 제시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미래를 위한 적극적 사회투자 전략임
 - 아동보호체계는 발달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본 자료는 박세경 외(2014). 「아동보호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보완하였음

** 발달위기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제3조 4호)”, 즉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과 “지원대상아동(제3조 5호)”이라 하여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포함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환경을 보장받을 수 없는 광의의 발달위기 상태(developmental at-risk)의 노출 또는 노출 우려가 높은 아동으로 개념화하였음

- 유기·방임, 학대·폭력, 빈곤 등 발달위기 환경으로부터 아동의 안전 담보
- 발달위기 요인(developmental at-risk factor)의 예방적 제거와 건강한 발달 촉진 요인의 확산
- 심리정서적 안정,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발달상의 손상·장애의 예방
- 잠재력의 최대 발현과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 준수를 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

■ 2013년 12월 기준, 아동보호체계를 통한 대안적 양육 및 보호가 필요한 상태의 요보호 아동은 6,020명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부모 또는 주 양육자에 의한 원가정 보호가 적절치 못한 상황에서 공적 보호주체에 의한 대체적 · 보완적 · 보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적극적 발굴 및 필요한 최선의 조치 제공을 전제할 때, 요보호 아동 발생의 감소 추세는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2013년 요보호아동 발생 규모는 경제위기의 여파가 아동 양육 및 돌봄의 기능마저 위협하던 2008년에 비해 35% 가량 감소한 규모이며, 18세 미만 전체 아동인구의 0.06% 수준임. <표 1> 참조

○ 그러나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현행 보호체계가 다양한 발달위기 아동의 안전보장 측면에서 예방적 개입과 원가정 양육에 대한 지지 · 지원을 통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표 2> 참조

- 보호조치의 내용은 대부분 대안양육 시설 등으로 배치한 실적이며, 요보호아동 현황 통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대안양육 시설 등으로 보호조치 완료된 아동의 발생 사유에 대한 수집 · 보고 통계임

<표 1> 발생 유형별 요보호아동의 규모

(단위: 명)

연도	기아	미혼모 등	미아	비행 가출 부랑	학대	부모빈곤 실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등	전체
2013	285	1,534	21	512	1,117	338	545	133	1,535	6,020
2012	235	1,989	50	708	1,122	448	553	166	1,675	6,926
2010	191	2,804	210	772	1,037	586	772	203	2,015	8,590
2008	202	2,349	151	707	891	1,036	732	274	2,943	9,284

자료: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자료. http://www.mw.go.kr/front_new/ib/sib030301vw.jsp

<표 2> 당해 연도 발생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결과

(단위: 명)

연도	시설보호				재가보호				전체
	양육 시설 등	일시 보호 시설	장애 아동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소년 소녀 가정	입양	가정 위탁	입양전 위탁	
2013	1,731	801	39	686	20	478	1,749	516	6,020
2012	2,272	676	25	775	117	772	2,289	-	6,926
2010	2,445	1,751	23	623	231	1,393	2,124	-	8,590
2008	2,997	1,261	39	667	178	1,304	2,838	-	9,284

자료: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자료. http://www.mw.go.kr/front_new/ib/sib030301vw.jsp

2.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가. 보호대상 발달위기 유형의 지역적 규정

- 정책당국은 현행 아동보호체계 하에서 보호아동의 규모를 대략 4만여 명으로 산정하고 있음
 - 아동보호체계의 보호대상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할 경우, 보호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저하로 위기아동 보호 기능 자체가 제한될 수 있음
 - 반면 지나치게 미시적인 발달위기 관련된 사건·사고를 중심으로 보호체계의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보호서비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개입 기회를 놓치거나, 아동 보호권 보장의 기회를 박탈하는 형평성 문제를 양산하여 공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위기아동이 증가할 수 있음

〈표 3〉 공적 아동보호체계 내 보호아동의 규모

(단위: 명)

연도	아동복지 시설 ¹⁾	소년소녀 가정	아동공동 생활가정	국내 입양	국외 입양	가정 위탁	학대판정 아동	전 체
2013	15,239	493	2,481	686	236	11,169	6,796	38,022
2012	15,916	796	2,438	1,125	755	11,030	6,403	40,343
2010	17,119	1,327	2,127	1,462	1,013	16,359	5,657	47,539
2008	17,992	2,058	1,664	1,306	1,250	16,608	5,578	49,012

주: 1)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 직업훈련시설 및 아동종합시설을 포함.
 자료: 2014 보건복지통계연보(2014).

- 아동발달의 관점에서 볼 때, 아동기는 독립적 생존이 어려운 시기로, 태어나고 자란 가족환경과 그 가족이 관계 맺는 외적 환경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주 양육자의 돌봄과 보호를 통해 독립적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시기임
 - 따라서 아동은 그 가족과 연계된 외부 환경의 당면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외부효과 때문에 발달위기에 노출되거나, 일상을 침범하는 인사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으로부터 위기를 경험할 수 있음
 - 발달위기는 아동 개인의 성장발달 과정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성인기 이후까지 부정적 여파가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막대한 사회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
 - 공적 책임을 전제로 발달위기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환경을 진단하여 적절한 개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발달위기에 대한 정책적 규명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빈곤, 미혼모(부) 양육, 각종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갈등 및 해체, 가족자원의 결핍, 폭력,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정서적 건강 문제, 열악한 주거환경, 부적절한 양육행동 등은 대표적인 발달위기 요인으로 기존 실증연구들이 입증하고 있음
 - 발달위기는 단일 요인에 의해 초래될 수도 있지만 복수의 위기요인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으며, 위기요인의 중복성이 높아질수록 아동의 성장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짐

- 특히 아동기 빈곤문제의 다차원성은 성장과정 전반은 물론 아동의 원가정 유지와 양육기능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를 가중시키므로 사회적 차원의 보호와 대응이 요구됨

〈표 4〉 국내외 실증연구에 나타난 대표적 발달위기 요인들

위기특성	개인적 요인	가족관계/가정 환경적 요인	가족 외적/외부 환경적 요인
상황적 위기로인	- 정신적 · 신체적 건강문제 (아동 vs 가족원)	- 생활사건 스트레스 (재난재해, 가족원 사망 등) - 우발적 가족갈등(불화, 가정폭력)	- 보육시설 부적응, 교사학대 등 -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왕따 등 - 비행, 가출, 또래의 일탈 · 비행 - 자살, 학업중단 등
지속적 위기로인	- 아동 기질적 · 병리적 요인: 문제행동, 공격성, 충동장애, 질병 · 질환 - 양육자 병리적 요인: 신체적 · 정신적 질환, 약물 및 알코올 중독	- 부적절한 양육태도 및 기술 - 의사소통 단절, 부모-자녀관계 문제 - 가족갈등(만성 가정폭력, 이혼) - 방임, 유기 등 아동학대	- 가족과 부모의 사회적 고립 - 양육가치관의 대립 - 반사회적 행동(예, 체벌)에 대한 수용적 법제도
근원적 위기로인	- 주양육자의 불우한 아동기 - 가정폭력 노출 경험	- 빈곤 및 경제적 어려움 - 노동시장 참여 배제, - 낮은 사회경제적 지원	- 지역사회 범죄율 - 취약한 사회관계망 - 열악한 아동 · 가족 지원체계

위기도 수준에
따른 분류 :



관심 · 취약 아동

보호아동

고도위기 아동

나. 위기아동 보호서비스의 파편적 · 분절적 전달체계와 연계 취약성

- 아동보호체계 관련 제도 집행 과정에서 부처 간,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역할 및 기능 조정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가 취약한 실정임
 - 정책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으로 분리되어 있고, 정책대상별 보호 사업의 시행 부처가 상이하여 기능상 유사 서비스가 공급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관련법이 규정하는 정책대상의 연령 기준이 단절적이어서 서비스 총량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연령대별 일부 서비스 대상의 중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함
 -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유지되면서 위기아동이 보호체계로 (간신히)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위기상황에 대한 즉각적 개입에서 서비스의 진행 및 사후 관리(모니터링)로 이어지는 보호서비스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발달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절차는 해당 아동이 포함된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체계적 개입을 기본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가족 보호 및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쉼터, 성폭력·성매매관련 지원기관, 청소년 한부모 지원기관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보호체계와 아동보호체계 간의 부처간, 서비스 영역간 칸막이가 존재하여 생애주기와 연동하는 보호체계의 연속성이 단절되어 있음

다. 위기아동 보호에 대한 불분명한 책임 소재와 전문성 제약

- 입양 절차 및 학대아동 관련 보호 업무 등 아동보호체계의 핵심적 기능과 역할이 민간 서비스 공급기관을 통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수행되면서, 국가(정부)는 업무 위탁 과정 및 해당 기관에 대한 관리·규제 수준의 제한적 의무만을 담당하고 있음
 - 위기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 이행 과정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의 효율성 논리와 인적·물적 자원의 제약 등을 이유로 비정상적 관행과 타협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과 같이 비극적 사건 직후에는 일시적·즉흥적인 관심은 촉발되었으나 근본적이고 실천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미흡하여 아동보호의 국가책임 유기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음
 - 담당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에 의존하여 위기아동의 보호조치 및 향후 진로가 결정되고 있으며, 위기아동이 배치된 위탁 기관의 예산과 재량에 따라 보호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모니터링은 전무한 실정임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서비스 제공 주체별 역할과 책임 분담 기준이 모호하고, 필요시 서비스 연계 및 협력적 네트워크 가동을 위한 정보공유와 기획·조정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함
 - 보호체계로 유입된 아동의 위기관련 기본정보, 가족 배경정보, 서비스 이용과정 등이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보호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위기아동에게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사후 대응 중심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급급한 현실임
 - 잠재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기 수준이 심화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전 예방적 개입 및 보호조치의 효과성을 높이는 조기 개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임
 - 보호조치의 내용도 원가정 지지 및 복원 서비스와 같이 위기아동의 미래와 성장기를 아동중심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대안양육과 시설보호 배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과 가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가족지원서비스와 사후 관리는 극히 취약함
 -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전개에 필요한 시·군·구 아동보호 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매뉴얼도 ‘사업안내·지침’ 수준에서 가름하고 있어,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보호대상 아동의 위기 수준과 보호 욕구, 부모상태 및 가정환경,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사정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매뉴얼도 부재함
 - 시·군·구 본청의 아동복지담당 공무원은 평균 7.8명(공무원 4.8명,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요원 3.0명)으로, 원가정 분리된 보호아동의 배치 결정은 주로 아동업무 전담공무원(86.8%) 혹은 아동업무 담당팀장(36.2%)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3. 아동 안전보장체계(Child Safeguarding System)의 구축

- 아동보호체계가 본연의 위기아동 보호기능을 정립 · 강화하고, 발달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과 미래를 대비하는 적극적 사회투자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아동중심의 안전보장체계 구축 · 운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아동안전보장체계 구축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원칙 1】 공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 국가의 아동보호 책무성을 강화한다.
- 【원칙 2】 발달위기 환경에 대한 즉각적 위기대응체계의 가동을 위하여 위기아동 보호체계 통합창구를 마련한다.
- 【원칙 3】 발달위기 상황의 재발 방지와 사전 예방적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원가정 지원 및 보호의 원칙을 정립한다.
- 【원칙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아동 이익이 최우선 보장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간, 학제간, 부처간 소통 채널의 확보와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 【원칙5】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안전체계 구축의 공공성 정립과 국가책임 실현을 위하여 아동보호 전담 인력의 충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매뉴얼을 통한 보호절차의 표준화를 도모한다.

- 아동 안전보장체계는 발달위기 환경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아동의 안전 보장과 발달적 손상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최적의 발달환경 보장을 전제로 함
 - 위기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은 예방적 수준의 개별화된 서비스, 위기상황에 대한 조기 진단과 정확한 사정, 그리고 보호 유형별 서비스 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성과 이들 간의 협업 및 통합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음
 -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아동보호서비스 주체들이 담당하고 있는 유사 기능 및 자원의 조정과 통합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전체 사회보장 체계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아동 안전보장체계의 작동 여건을 성숙시켜야 할 것임
- 아동 · 청소년을 발달주기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고, 위기아동이 경험하는 발달위기 상태를 가족단위의 포괄적 접근을 전제로 진단하여 구체적인 아동 및 가족보호서비스를 계획하고 전달함
 - 2009년 5월 발표된 영국의 아동보호 개선을 위한 실행 계획(*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England: Action Plan*)에서도 위기아동 보호과정의 리더십과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아동 · 가족 단위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들 간의 협업을 강력하게 권고하였음
 - 위기아동 보호서비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동의 주생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보건의료 제공체계 등 관련 체계 간의 지속적 상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 아동안전보장체계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비제도화, 비공식적인 영역에서부터, 제도화 · 공식화된 영역 전반에 걸쳐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아동 스스로 본인의 입장과 권리를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발달위기 아동 사례별 보호책임을 갖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담당자의 위기아동 보호 전담제 실시를 통해 아동보호 기능의 책무성을 확립하고, 보호과정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주체 간의 연계 · 조정을 위한 지역단위의 통합 게이트웨이 기능을 담당함

- 아동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의 순환보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인력 운용기준의 마련을 검토하도록 함
- 아동 안전의 증진, 예방, 위기 상황처리 및 위기대응의 각 차원에서 최초 개입과 진행 단계별 사정과 진단·검사 전략,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 치료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의 일련의 과정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아동안전보장체계는 발달위기 상황을 사전 예방적으로 차단하고, 위기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위기 심화 이전에 조기개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장, 그 규모를 현행 4만여 명 수준에서 전체 아동인구의 1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함
 - 위기아동 보호의 대상을 발달위기 유형 및 위기 수준을 고려하여 ‘우선 보호 아동’과 ‘관심·취약 아동’으로 구분하고, 국가의 시의적절한 개입과 보호서비스의 지속성, 전문성,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함
 - 중단기적으로는 아동안전보장체계의 개입과 보호를 받는 아동을 110.6천 여명 규모의 ‘우선보호대상’과 ‘관심·취약아동’의 30% 수준인 237.4천여 명을 포함한 348천여 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표 6〉 아동안전보장체계로의 전환에 따르는 보호대상 범주의 확장(안)

위기아동 유형		규모
시설 보호	시설보호 아동	15,916
	그룹홈 거주 아동	2,438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133
	성매매 피해 보호시설 아동	197
	청소년 쉼터 아동	640
	소년범(강력범 제외)	68,236
재가 보호	가정위탁 아동	14,584
	학대피해 아동	6,774
	국내입양 아동	922
	소년소녀가정 아동	796
	요보호 아동	(6,926)
우선 보호대상 아동		110,636명
학교폭력 피해아동		62,000
이혼가정 아동		100,312
빈곤아동		304,672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구 아동		324,200
관심·취약 아동 (전체 아동대비 8.49%)		791,184명
전체 요보호 아동 (전체 아동대비 9.75%)		901,820명

- 보호대상 발달위기의 포괄 범위 확장에 따르는 보호대상의 규모 확대 시, 아동안전보장체계가 작동하기 위한 지역사회 단위의 자원 여건과 인적 역량, 관련 자원 간의 네트워크 및 연계·협력 수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보호대상을 급진적으로 확대할 경우, 아동안전보장체계가 오히려 보호 사각지대의 양산 및 보호기회의 형평성 보장 등의 측면에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 표적화 비율 30%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2013년 지자체 조사 결과」중에서, 복지민원 신청자 중 복합적 문제 발견으로 추가적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규모 비율 30%를 준용하였으며, 복지부(2013)「아동통합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체계 개선방안 연구」중에서 드림스타트 평균 사례관리 아동 가운데 중증도 이상의 위기를 경험한 아동 비율 29.2%를 참조하여 적용한 것임
- 아동안전보장체계 구축·운영의 기본 방향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공적 기능 강화를 전제로 하는 보호체계의 작동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통합을 전제로 하며, 시·군·구 본청의 아동보호 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업무 담당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잦은 이직은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성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임
- 아동보호 전담인력의 확충은 아동보호 기능의 국가 책무성 강화에 따르는 다음의 재편 기능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중요한 선결과제임
 - 사업관리 중심의 아동복지행정에서 위기아동 사례 중심의 대면 전문서비스의 강화
 - 지역단위 아동보호서비스의 기획·조정 및 연계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정립
 - 위기아동 보호 및 사전 예방서비스 확대를 위한 보호대상의 단계적 확대
 -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의 적극적 발굴·대응 및 조기개입